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84호

발의연월일: 2025년 10월 14일

발 의 자: 김선호 의원, 김명진 의원, 조상연 의원

1. 개정이유

❍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의 상임위원회위원장(총무위원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무위원장의 명칭을 행정문화위원장으로 개정(안 제2조제1호)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10. . ~ 2025. 10.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당진시의회 규칙 제 호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총무위원장”을 “행정문화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제2조(법정대리) ---------- ---------- ---------- ---------- ---------- ------.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하고,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순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리한다.	1. ---------- ---------- ---------- -- 행정문화위원장--------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붙임1 관계법령

□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당진시의회(이하 “의회” 라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행정문화위원회 7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이내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명회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985호

발의연월일 : 2025년 10월 14일
발 의 자 : 김명회 의원, 윤명수 의원, 김명진 의원, 조상연 의원, 김덕주 의원

1. 제정이유

❍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 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의무부과와 처벌 등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의 예방 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며 실태조사,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상담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4조)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상담 지원,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108)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보조금 심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10.　. ~ 10.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당진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및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5.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시장은 당진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되는 시설·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상담 지원)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 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상담 및 제8조에 따른 교육·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6조제3호 관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의 독성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4.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7.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의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의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의료기기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108			
정 책 명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강성훈	전화번호	041-350-33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9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모르겠음 / 1-3 : 모르겠음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 · 문화적 차이 등) : 모르겠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모르겠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모르겠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안전총괄과장 귀하

붙임3 관련 부서 검토 의견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김명회 의원**

❍ 제안이유

-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무부과 및 처벌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Ⅱ 주요내용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상담 지원,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0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안전총괄과) 종합의견: 제정 타당, 일부 수정**

-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당진시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상담 지원, 협의체 구성과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중대재해 예방하기 위한 근거 및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므로 제정 타당함.
- 다만, 현행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현재는 당진시청이 사업주로서 관리하는 현업업무 종사자 및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에 한하여 조례 적용이 가능
- 아울러,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문구상의 오탈자 등 수정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제정 적법, 일부 수정**

-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존 산업재해 예방 조례와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며 중복될 우려 또한 없음
- 다만, 교육·홍보 등 공통 사업은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부지침에서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여 운영 필요
- 아울러,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문구상의 오탈자 등 수정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당진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시장은 당진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조문 내용 상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가 있으므로 조의 제목에 '지정 등'을 추가
제7조(상담 지원) 시장	제7조(상담 지원) 시장	- 오타 수정 (호 → 조)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은 제6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은 제6조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 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해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 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오타 수정 (중대해재 → 중대재해)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986호

발의연월일 : 2025년 10월 14일
발 의 자 : 박명우 의원, 서영훈 의원, 윤명수 의원, 김명진 의원, 조상연 의원, 김덕주 의원, 김명회 의원

1. 개정이유

❍ 새마을운동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 및 새마을정신 전파를 위한 봉사활동 등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새마을운동 해외 보급을 위한 지원 (안 제3조의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101)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보조금 심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10. . ~ 10.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장새마을운동당진시협의회”를 “직장새마을운동당진시협의회, 당진시청년새마을연대”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그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당진시지회와 새마을지도자당진시협의회, 당진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당진시지부, 직장새마을운동당진시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 포함)를 말한다. 2.·3. (생 략)	제2조(정의) ----------. 1. ----------, 직장새마을운동당진시협의회, 당진시청년새마을연대 ----------. 2.·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을 보호·육성하고 새마을사업을 권장·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신 설>	제3조(지원) ① ---------- 지원----------. 1. ~ 4. (현행과 같음) 5.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그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붙임1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108			
정 책 명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강성훈	전화번호	041-350-33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9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모르겠음 / 1-3 : 모르겠음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 · 문화적 차이 등) : 모르겠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모르겠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모르겠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안전총괄과장 귀하

붙임3 관련 부서 검토 의견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박명우 의원**

❍ 제안이유: 새마을운동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 및 새마을정신 전파를 위한 봉사활동 등 지원 근거 마련

❍ 소관부서: **평생학습새마을과**

Ⅱ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새마을운동 해외 보급을 위한 지원 (안 제3조의5)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평생학습새마을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는 당진시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

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명문화 하는 내용으로,

-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통하여 청년들의 새마을운동조직 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에서 한국형 협력 모델로 관심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국제 보급을 지원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개정 타당함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 본 조례안은 청년 조직을 정의하여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해외 보급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국제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어긋남이 없음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987호

발의연월일 : 2025년 10월 14일
발 의 자 : 조상연 의원, 서영훈 의원, 김봉균 의원, 김선호 의원

1. 개정이유

○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인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와 협약 체결을 한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대수와 개인부담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3조의2) 제1항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관련 내용을 규정함

나. (안 제3조의2) 제2항에 협약 체결이 된 경우 시장이 인정하면 세대 규정과 개인부담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사가스 사업법」

○ 예산조치 : 연도별 비용추계서 첨부

○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2025A충남당진117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 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10. . ~ 2025. 10. .) 결과 :

○ 관련 부서 의견 : 소관부서 검토 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협약체결)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고, 협약에 대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제1항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협약체결)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고, 협약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제1항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조상연 의원**

❍ 제안이유

-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인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충청남도 및 사업자와 협약체결을 한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대수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소관부서: **미래에너지과**

Ⅱ 주요내용

❍ 충청남도 및 사업자와 협약체결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협약체결이 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의2)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미래에너지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지리적여건 등으로 인해 지원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므로 개정 타당함.
- 다만, 현행 개정안으로는 단순 협약으로도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우발채무를 방지하기 위한 단서 조항 추가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 본 조례안은 협약 체결 시 세대수와 관계없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급 원활화 및 주민 생활 편익 향상에 기여하며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3조의2(협약체결)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의2(협약체결)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협약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및 타 지자체와 협업하는 경우에 유동적으로 대응
② 제1항의 협약체결이 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단서 조항 추가

Ⅴ 참고사항

❍ 관련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붙임1]**

❍ 예산조치: 5년간 3,049,600천원 **[붙임2]**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117) **[붙임3]**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30조2)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꽁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절차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의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시행령 제9조의2)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정미면·채운동 등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

나. 관련 조문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취약지역(정미·채운 등)에 도시가스 특별 공급을 위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됨.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3,049,600	1,125,600	924,000	-	-	1,000,000
도 비	810,000	270,000	260,000	-	-	280,000
시 비	2,239,600	855,600	664,000	-	-	720,000
기타(자부담)	-	-	-	-	-	-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및 자체수입(지방세 등)

3. 연도별 비용추계표

가. 붙임 참조

4. 작성자 : 경제국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1,125,600	924,000	-	-	1,000,000	3,049,600
도비 보조금		270,000	260,000	-	-	280,000	810,000
자체수입		855,600	664,000	-	-	720,000	2,239,600
기타(민자)		-	-	-	-	-	-
세 출		1,125,600	924,000	-	-	1,000,000	3,049,600
도시가스특별지원		1,125,600	924,000	-	-	1,000,000	3,049,600
재원 조달		1,125,600	924,000	-	-	1,000,000	3,049,600
의존재원	소 계	270,000	260,000	-	-	280,000	810,000
	보조금	270,000	260,000	-	-	280,000	810,000
	지방교부세	-	-	-	-	-	
자체수입	소 계	855,600	664,000	-	-	720,000	2,239,600
	지방세	855,600	664,000	-	-	720,000	2,239,6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117			
정 책 명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미래에너지과		
	담당자명	김윤미	전화번호	041-350-309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9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미래에너지과)	*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 · 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예 / 3-2 : 아니요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미래에너지과장 귀하

붙임4 **의원발의 조례안(조상연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협약체결)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약체결이 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88호

발의연월일: 2025년 10월 14일

발 의 자: 최연숙 의원, 김봉균 의원, 김명진 의원, 조상연 의원

1. 개정이유

❍ 「2025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교육 및 홍보,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마. 지정 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홍보나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지원 신청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공유재산 사용 근거를 둠(안 제14조)

자.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10. . ~ 2025. 10.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영리・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써 공유경제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주요시책
3. 제9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당진시 공유경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정 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에 홍보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

서를 첨부하여 제15조에 따른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및 유사 사업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당진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우수 공유경제 참여자 선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제15조에 따른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 및 단체, 법인, 기업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 사용)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정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한 심의
4. 제13조에 따른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 선정에 대한 심의
5.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공유경제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7.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 조 례 명: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발의의원: **최연숙 의원**
- ❍ 제안이유: 「2025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확보
- ❍ 소관부서: **기업육성과**

Ⅱ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4조)
-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 ❍ 교육 및 홍보,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 (안 제9조)
- ❍ 지정 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홍보나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 지원 신청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제12조)
- ❍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공유재산 사용 근거를 둠 (안 제14조)

❍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기업육성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 본 조례안은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규정 형식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 유사한 위원회인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개정 타당함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 본 조례안은 조례의 법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유경제 촉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Ⅳ 참고사항

❍ 관련법령: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89) **[붙임1]**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89			
정 책 명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기업육성과		
	담당자명	김현영	전화번호	041-350-457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업육성과)	*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 · 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예 / 3-2 : 아니오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기업육성과장 귀하

붙임2 **의원발의 조례안(최연숙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영리·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써 공유경제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주요시책
3. 제9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당진시 공유경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당진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정 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 홍보 지원이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5조에 따른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및 유사 사업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당진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우수 공유경제 참여자 선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제15조에 따른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 및 단체, 법인, 기업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 사용)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정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여부에 대한 심의

4. 제13조에 따른 우수 공유경제참여자 선정에 대한 심의

5.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공유경제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7.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89호

발의연월일: 2025년 10월 14일

발 의 자: 조상연 의원, 최연숙 의원, 김봉균 의원, 김명진 의원

1. 개정이유

❍ 「2024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의 권고 의견에 따라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를 5개의 장으로 구분함

- 제1장 총칙 /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 / 제3장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 제4장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 제5장 보칙

나.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5조)

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위원회 위원장 직무, 회의, 간사, 준용 및 운영세칙 규정을 둠(안 제9조 ~ 제12조)

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경영, 교육·훈련, 시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5조)

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16조)

자.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우선 운영위탁 근거를 둠(안 제17조)

차.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함(안 제19조)

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범위,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구매 예외의 경우를 규정함(안 제20조 ~ 제22조)

파. 시장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하.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판로 지원 및 우선구매 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거.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업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둠(안 제26조)

너.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등을 위한 홍보활동 근거를 둠(안 제27조)

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지원예산 회수 근거를 둠(안 제28조)

러.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제12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10. . ~ 2025. 10.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사회적 경제의 육성·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을 받는 법인, 조합, 회사, 농어업법인 및 비영리단체

아.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이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동에 따른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및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육성 등을 위하여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사회적경제 업무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나.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다.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준용 및 운영세칙) 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제13조(경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컨설팅,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사회적 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3.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및 보호·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우선 운영위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타 기관단체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제18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당진시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구매계획의 이행에 드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제18조에 따른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그 밖에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모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21조(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5. 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 실적

제22조(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해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구매담당자 교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판로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증진) ① 시장은 관내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하고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평가 및 보상)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홍보)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장

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멘토링, 컨설팅, 현장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에 대한 인식 확산

제28조(자료제출 요구 및 지원예산 회수)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예산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조상연 의원**

❍ 제안이유: 「2024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의 권고 의견에 따라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용의 효육성을 제고하고자 함

❍ 소관부서: **기업육성과**

Ⅱ 주요내용

❍ 조례를 5개의 장으로 구분함

- 제1장 총칙 /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 / 제3장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 제4장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 제5장 보칙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5조)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6조)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8조)

❍ 위원회 위원장 직무, 회의, 간사, 준용 및 운영세칙 규정을 둠 (안 제9조 ~ 제12조)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경영, 교육·훈련, 시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제15조)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을 규정함 (안 제16조)

❍ 우선 운영위탁 근거를 둠 (안 제17조)

❍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18조)

❍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함 (안 제19조)

❍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지거 제품 우선구매 범위,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 구매 예외의 경우를 규정함 (안 제20조 ~ 제22조)

❍ 시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판로 지원 및 우선구매 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4조 및 제25조)

❍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업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둠 (안 제26조)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지원예산 회수 근거를 둠 (안 제28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기업육성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 본 조례안은 중복되는 사항에 규정하고 있는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개정 타당함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 본 조례안은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유사·중복 규정을 일원화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판로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Ⅳ 참고사항

❍ 관련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붙임1]**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90) **[붙임2]**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90			
정 책 명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기업육성과		
	담당자명	김현영	전화번호	041-350-457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업육성과)	*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예 / 3-2 : 아니오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기업육성과장 귀하

붙임3 **의원발의 조례안(조상연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사회적 경제의 육성·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 의 연계 등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을 받는 법인, 조합, 회사, 농어업법인 및 비영리단체

아.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이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동에 따른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및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육성 등을 위하여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사회적경제 업무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나.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다.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준용 및 운영세칙) 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제13조(경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컨설팅,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사회적 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3.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및 보호・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우선 운영위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타 기관단체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제18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당진시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구매계획의 이행에 드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그 밖에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모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21조(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5. 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 실적

제22조(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해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구매담당자 교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판로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증진) ① 시장은 관내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하고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평가 및 보상)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홍보)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멘토링, 컨설팅, 현장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에 대한 인식 확산

제28조(자료제출 요구 및 지원예산 회수)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예산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당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선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90호

발의연월일: 2025년 10월 14일
발 의 자: 전선아 의원, 김봉균 의원, 심의수 의원, 한상화 의원

1. 제정이유

❍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충남 도내에서도 천안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당진시 역시 인구유입 지역이라는 상황과 전·월세 시장 확대에 따라 전세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 기한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일시적 제도만으로는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려움. 특히 긴급 생활안정, 임시거처 제공, 심리·법률지원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속하고 세밀한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당진시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당진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제7조)

다. 전세피해임차인 등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안 제8조~제9조)

라. 임차인 보호사업,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붙임1]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102) [붙임2]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10 . . ~ 10.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붙임3]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내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하여 주택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 금융·주거지원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관계 기관 연계 지원
2.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3.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회 지원에 한함)
4.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1회 지원에 한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과 조치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절차, 정산,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임차인 보호 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률상담 및 관계 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의 보호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전세피해확인서 등에 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임차인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붙임1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전세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금융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같은 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들의 해당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한 채무의 불이행 및 대위변제의 등록을 유예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④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대상에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현황 조사 및 조치, 공공위탁관리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102			
정 책 명	**당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주택개발과		
	담당자명	송민호	전화번호	041-350-450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9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택개발과)	* '당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주택개발과장 귀하

붙임3 관련 부서 검토의견

「당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전선아 의원**

❍ 제안이유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당진시 역시 인구유입 지역이라는 상황과 전·월세 시장 확대에 따라 전세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당진시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당진시민의 주거복지 향상 추진

❍ 소관부서: **주택개발과**

Ⅱ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제7조)

❍ 전세피해임차인 등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안 제8조 ~ 제9조)

❍ 임차인 보호사업,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 제13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주택개발과) 종합의견: 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방지에 기여하므로 제정 타당함
- 다만, 예산 운용의 효율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횟수 제한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제정 적법,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 지원과 관련 상담을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법적 어긋남이 없음
- 다만, 지원 횟수 등의 명확화를 통해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 보완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8조(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사업) 3.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제8조(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사업) 3.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다만 1회에 한한다. 4.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다만 1회에 한한다	- 금전적 지원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어 횟수 제한 필요

V 참고사항

❍ 관련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붙임1]**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102) **[붙임2]**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